

2021년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

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‘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’을 신규모집하오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7월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■ **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**(이하 농공상 기업) :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 조달, 제조가공 및 기술 개발을 연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(주관경영체와 참여경영체로 구성)

■ 신청 자격

- 아래 유형에 속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
-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

* 농공상기업 유형

유형	융합 형태
전략적제휴형	•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 원료 조달, 신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 또는 계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
농업인경영형	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·가공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, 미용 제품 등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생산 * 주관경영체 단독참여 가능
공동출자형	• 농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
네트워크형	• 원료·자원 이용, 기술 개발, 생산·제조, 마케팅·판매 등 각 기능의 신축적 조합이 가능한 협력·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에 따라 협업 추진

*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인 지원요건(1년 이상 운영실적, 출자금 1억 이상 등)에 해당하여야 함

* 주관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등록된 기업이어야 함

■ 신청 제외

- 국산 농산물 원료사용 실적 미보유 기업,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
- 식약처 회수·판매 중지 제품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, 영업소폐쇄 및 제품 폐기처분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(공고일 기준 처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)

※ 회수판매중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영업정지, 영업소폐쇄, 제품 폐기처분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, 향후 재발방지책 제출 시 신청 가능(자유양식)

■ 공고 및 신청 :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(www.foodbiz.or.kr)

- 제출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일체

■ 지정 기준 및 절차

-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 기업
 - * 단계별 평가점수 : 서류 50%(계량50점, 비계량50, 가점7) + 현장 50%(100점)
- 선정절차 : 신청서 접수(공고일 ~ 7월30일) ▶ 서류 평가(8월 초)
 - ▶ 현장 평가(8월) ▶ 평가위원회 개최(9월)

■ 농공상기업 지정 후 주요 지원내용

1) 판로확대

①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‘찬들마루’ 입점 지원

- 지원 내용 : 시즌별 프로모션 참여,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등
 - * 현황 : 용산역 찬들마루 매장, 인터넷 오아시스마켓, 우체국쇼핑몰

② 통합 브랜딩 지원

- 지원 내용 : 패키지 및 로고개발 * 현황진단 및 컨설팅, 상품성 개선 등

③ 국내·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

- 지원 내용 : 부스 임차비용(90%), 장치·기본비품 임차비
 - * '21년 계획 : KFS, 독일 Anuga

※ 사업관련 세부내용 문의 : aT 식품기업육성부 ☎ 02-6300-1732

2) 금융지원

-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

※ 금융지원 세부내용 문의 : aT 정책금융부 ☎ 061-931-1143

※ 홈페이지 바로 가기 : <http://www.at.or.kr/contents/apko331300/view.action>

○ 용 도

- 운영자금 : 제품 생산 관련 원료구매·저장·가공·운송 등 소요비용
- 시설자금 : 저장·가공·부대시설의 신축·증축·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
(부지매입비 제외)

○ 대출금리

- 고정 : 농업경영체 연 2.5%(시설자금 연 2.0%) / 비농업인(일반업체 등) 연 3.0%
- 변동 :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

※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

○ 대출비율 : (운영) 20억원, (시설) 20억원

○ 대출기간 : (운영) 2년, (시설) 10년 이내(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)

○ 사업의무

- (운영) 대출액의 125% 이상 제품생산비용 및 운영자금 집행
- (시설) 시설 기성금액이 대출액의 125% 이상

*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

■ 신규지정 관련 문의

※ 신규지정 세부내용 문의 : aT 식품기업육성부 ☎ 02-6300-1735